

## 2022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2022년도 예비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모집공고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로 최종 선정 후 협약을 통해 8개월 내외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동 공고의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경영·자문 서비스)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특허취득비 등 (최대 1억원, 평균 50백만원)	· 총 40시간의 창업교육 제공 · BM수립, 마케팅, 투자유치 등 기본 및 자율교육	· 전담멘토와 1:1 매칭하여 사업 전반 경영·자문 멘토링 · 기술·시장 분야별 멘토링

\*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하여 지원

- 협약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6월 ~ '23.1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1,260명 내외

\* 일반분야 760명 내외 / 특화분야 500명 내외

\*\* 일반·특화분야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① 일반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쏘 기술분야

○ 지원규모 : 총 76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발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0명~20명)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배정(총 312명 내외)

- 일반분야는 공고일 기준('22.2.24), 생년월일(주민등록 기준)에 따라 청년\* 60%이상, 중장년\*\* 40%이내로 선정할 예정

\* 청년 : 만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5일 이후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이 '82년 2월 24일 이전인 자)

< 일반분야 주관기관별(29개 기관) 예비창업자 지원규모(안) >

주관기관	기본규모(명)	소재지	주관기관	기본규모(명)	소재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18	강원(춘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16	제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0	경기(성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16	충남(아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16	경남(창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6	충북(청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12	경북(구미)	건국대학교	16	서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16	광주	경기대학교	18	경기(수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6	대구	계명대학교	16	대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16	대전	동국대학교	12	서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8	부산	동아대학교	12	부산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10	전남(나주)	성균관대학교	16	경기(수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0	서울	수원대학교	16	경기(화성)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12	세종	연세대학교	18	서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12	울산	인천대학교	16	인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8	인천	전주대학교	12	전북(전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16	전남(여수)	한밭대학교	16	대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2	전북(전주)	<b>합 계</b>	<b>448</b>	-

※ **【참고사항】**

☞ 일반분야 주관기관은 창업 및 사업운영 경험이 전혀없는 '생애최초' 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패키지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주관기관 개별 모집, 100명 내외, 6월 예정)

\* **창업프리스쿨** : 예비창업패키지에 정식으로 참여하기 전 창업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활동자금(5백만원 내외) 및 사업모델 구체화 등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수료한 우수 예비창업자는 차년도('23)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시 우대할 계획

② **특화분야 지원규모**

○ 지원 기술분야 : 주관기관별 특화분야

○ 지원규모 : 총 50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발규모는 기본 선발규모(10개~20개)로 설정하고, 신청·접수 결과 지원 수요가 많은 기관에 추가배정(총 156명 내외)

\* 단, 소셜벤처, 여성분야는 각 100명 외 추가배정 규모 없이 운영하며, 그린경제 분야는 기본규모 외 추가배정하여 총 100명으로 지원·운영할 예정

**< 특화분야 주관기관별(11개 기관) 예비창업자 지원규모(안) >**

특화분야	주관기관	기본규모(명)	소재지	비고
소셜벤처	벤처기업협회	100	서울	-
여성	한국여성벤처협회	100	서울	-
그린경제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16	세종	그린경제 총 100명 지원 예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	서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12	전북(전주)	
D.N.A	광주과학기술원	18	광주	-
	한국발명진흥회	16	서울	-
	한국특허정보원	18	서울	-
바이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6	서울	-
무인이동체 (자율주행·드론)	한국도로공사	10	경북(김천)	-
핀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18	서울	-
<b>합 계</b>		<b>344</b>	-	-

◆ **일반분야 및 특화분야 신청 시 유의사항**

- 1) 신청자 거주지, 창업 예정지, 신청분야 등에 관계 없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22.3.17.목, 16:00) 후에는 신청 주관기관 변경 불가
- 2)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해당 주관기관에서 최종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창업교육 등 지원
- 3) 일반·특화분야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분야별 추가배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공고일('22.2.24.)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1-405호)에 참여하여 수행완료한 자가 공고일기준 기창업자인 경우, 당시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분야로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신청자격을 부여

- 단, 사업공고 전일까지('22.2.23.)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 신청분야

○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 < 일반·특화분야별 설명 >

구분	분야별 설명	
일반분야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재료), 바이오·의료(생명·식품), 에너지·자원(환경·에너지), 화학(화학·섬유), 공예·디자인 등 쏠 기술 분야	
특화분야	소셜벤처	사회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혁신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을 추구하는 분야
	여성	유망 기술창업 소재를 보유한 우수 여성분야
	바이오	생물체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생물공학 기술 분야
	핀테크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경제 모델을 구현하는 분야
	무인이동체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 및 드론을 통해 지능화 혁명을 이끌고 산업시장을 주도하는 분야
	그린경제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추구하는 분야
D.NA	안전한 데이터(D) 활용, 초연결 네트워크(N) 구축, AI(A) 확산을 통한 혁신분야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3.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및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3.17.)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고

#### ④ 중소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⑤ 중소기업부(舊 중기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 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⑥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 ⑦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예정)인 자(기업)

#### ⑧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

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  
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⑬ 신청자격 획득을 위해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포괄양도양수하였거나, 공동·각자 대표 명의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로 참여하려는 자
-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의무 및 역할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함\*\*

- 소셜벤처 분야 선정자는 창업 후 3개월이 속한 월말(단, 협약기간 이내) 까지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셜벤처스퀘어(<https://sv.ki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소셜벤처기업 판별결과 통지서(판별결과: 인정)'를 최종점검 시 제출하여야 함

\*\* 미충족 시 사업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 조치 예정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 \* 교육은 대표자 본인의 명의로 이수완료(이수증 발급 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와의 멘토링 (협약기간 내 총 12회),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 전담멘토가 협약기간 내 2개월마다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무실 조성·임차 현황, 직원 근무 현황, 구입 기자재 비치·활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http://www.startbiz.go.kr))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 기간** : 선정 후 8개월 내외('22.6월 ~ '23.1월 예정)

구 분	세부 내용																										
<b>사업화 자금</b>	<p>☞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b>사업화 자금을 평균 50백만원</b>(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협약기간 : 8개월 내외)</p> <p>*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p> <p>*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p> <p>*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사업 세부 관리기준' 참조</p> <p style="text-align: center;"><b>&lt; 비목정의 및 기준 &gt;</b></p> <table border="1" data-bbox="344 813 1430 2024"> <thead> <tr> <th data-bbox="344 813 560 860">비목</th> <th data-bbox="560 813 1278 860">비목 정의</th> <th data-bbox="1278 813 1430 860">집행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44 860 560 952">재료비</td> <td data-bbox="560 860 1278 952">•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td> <td data-bbox="1278 860 1430 2024" rowspan="10"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td> </tr> <tr> <td data-bbox="344 952 560 1081">외주용역비</td> <td data-bbox="560 952 1278 1081">•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081 560 1173">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td> <td data-bbox="560 1081 1278 1173">•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173 560 1265">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td> <td data-bbox="560 1173 1278 1265">•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265 560 1422">인건비</td> <td data-bbox="560 1265 1278 1422">•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td> </tr> <tr> <td data-bbox="344 1422 560 1630">지급수수료</td> <td data-bbox="560 1422 1278 1630">•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td> </tr> <tr> <td data-bbox="344 1630 560 1722">여비</td> <td data-bbox="560 1630 1278 1722">•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722 560 1812">교육훈련비</td> <td data-bbox="560 1722 1278 1812">•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812 560 1942">광고선전비</td> <td data-bbox="560 1812 1278 1942">•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td> </tr> <tr> <td data-bbox="344 1942 560 2024">창업활동비</td> <td data-bbox="560 1942 1278 2024">•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td> <td data-bbox="1278 1942 1430 202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월 50만원 한도</td> </tr> </tbody> </table>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50만원 한도
	비목	비목 정의	집행기준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한도 없음 (양산자금 사용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 소속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대표자, 대표자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회계감사비, 법인설립비 등)																									
	여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비,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50만원 한도																									



구 분	세부 내용				
<p><b>창업교육</b></p> <p>※ 총 40시간 교육이수 필수</p>	<p>☞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b>온·오프라인 교육 (40시간) 운영</b></p> <p>*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듀 등을 통한 기본교육(필수, 선택) 및 주관기관을 통한 자율교육을 제공할 예정(교육일정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p> <p>* 협약기간 중 총 40시간의 창업교육을 운영하고, <b>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 자금 환수조치 예정</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data-bbox="359 555 901 604"><b>기본교육(20H 이상)</b></td> <td data-bbox="981 555 1420 604"><b>자율교육(최대 20H)</b></td> </tr> <tr> <td data-bbox="359 604 901 739">창업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기업가정신 등 주제별 강의로 온라인을 통한 필수교육 및 자율선택 수강</td> <td data-bbox="981 604 1420 739"> <span style="font-size: 2em;">+</span>           선배 창업자 및 투자자와의 만남 등 주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킹데이 운영         </td> </tr> </table>	<b>기본교육(20H 이상)</b>	<b>자율교육(최대 20H)</b>	창업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기업가정신 등 주제별 강의로 온라인을 통한 필수교육 및 자율선택 수강	<span style="font-size: 2em;">+</span> 선배 창업자 및 투자자와의 만남 등 주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킹데이 운영
<b>기본교육(20H 이상)</b>	<b>자율교육(최대 20H)</b>				
창업아이디어 개발, 비즈니스모델, 기업가정신 등 주제별 강의로 온라인을 통한 필수교육 및 자율선택 수강	<span style="font-size: 2em;">+</span> 선배 창업자 및 투자자와의 만남 등 주관기관을 통한 다양한 네트워킹데이 운영				
<p><b>멘토링</b></p> <p>※ 총 12회 멘토링 필수</p>	<p>☞ 창업·경영 전문가를 <b>전담멘토로 지정</b>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b>밀착지원 서비스</b>를 제공</p> <p>* 선정자별 전담멘토 1인 필수 지정</p> <p>☞ 필요시, 기술·시장 등 <b>분야별 전문멘토</b>를 활용한 예비창업자의 <b>다양한 애로 해소 지원</b></p>				

## 4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 '22. 2. 24.(목) ~ 3. 17.(목)

**신청기간** : '22. 2. 24.(목) ~ 3. 17.(목) 16시까지

### ◆ 신청·접수마감 유의사항

- 1)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2)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 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4)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 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약관동의)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 시 유의사항

-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2) 예비창업자는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각 주관기관별 평가를 통해 선정(접수마감 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 3) **(실명인증)**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이 필요.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4) 공고일 기준 '**미창업**'으로 선택하여 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클릭 → ④ 사업신청 클릭 → ⑤ '2022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창업자 신청하기 클릭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등 약관 체크 → ⑦ 기본정보 입력 (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기업정보는 '미창업'으로 선택) → ⑧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 업로드(용량제한 30MB **유의**) → ⑨ 팀원 정보 입력(해당 시) → ⑩ 제출완료 클릭 → ⑪ 신청내역조회('K-Startup홈페이지 상단 사업신청→사업신청 내역조회'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가점 증빙서류 포함) (별첨 양식)

### ◆ 제출서류 유의사항

- 1)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 내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21년 양식에서 변경됨**)
- 2)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3) 필요 시, 변경된 사업계획서 양식에 대한 **【별첨】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작성매뉴얼**을 동 공고 내 게시하였으니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고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신청접수 완료 후 평가과정 및 안내 등은 신청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이며, 주관기관은 통합관리지침 제11조에 의거, 자격 요건을 검증한 자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운영

< 세부 선정평가 과정(안) >

<b>① 서류평가</b>	▶	<b>② 발표평가</b>	▶	<b>③ 최종선정</b>
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10분 발표, 20분 이상 질의응답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60점 미만 제외)

신청자격 요건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평가방법**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가점 반영)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류평가 가점 항목 및 점수 >

세부 가점 항목(최대 5점)	점수
<b>1)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b> * 단, 동 사업신청자가 권리자인 경우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1점
<b>2) 최근 2년 이내(20~현재) 정부 주최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b> * [붙임 3]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참조 *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 (단, 보유한 수상 경력 중 장관급 이상의 상 훈격이 1개 이상 있을 경우, 1점 추가부여) * 창업경진대회 주최 부처의 기관장 명의 상장 등 수상 증빙 제출 필요	최대 2점
<b>3) 고용·산업 위기지역 거주자</b>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 ① 전북 군산시 ② 울산 동구 ③ 경남 창원시 진해구 ④ 경남 고성군 ⑤ 경남 거제시 ⑥ 경남 통영시 ⑦ 전남 영암군 ⑧ 전남 목포시 ⑨ 전남 해남군	1점
<b>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기술로 창업 예정인 자</b>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준 *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 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 기준 참조	1점

\* 가점은 1단계 서류평가 시에만 반영하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미제출 시 불인정

**< 서류평가 면제 대상 >**

세부 면제 대상	비고
1) 2021년도 실전창업교육 교육생 모집(중기부 공고 제2021-189호, 364호) 실전창업교육 '(2단계) 오프라인 실습교육' 수료생	전담기관이 해당자 명단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관기관에 안내할 예정
2) 도전! K-스타트업 2021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중기부 공고 제2021-186호) 왕중왕전 진출팀 * 서류평가 면제는 팀 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3)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중기부 공고 제2021-618호) 수상팀 * 서류평가 면제는 팀 당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4) 2021년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중기부 공고 제2021-405호) 예비창업자 '최우수'자	

\* 서류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22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특화분야 모집 공고에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해야함

\*\* 단,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최우수자'가 공고일기준 기창업자인 경우, 당시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분야로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신청 자격을 부여

○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및 목적, 개발 방안, 사업화 전략, 대표자 역량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아이템 착안배경, 핵심기술 이해도 등에 대해 심층평가할 예정

\* 발표평가(PT 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평가지표**

○ 평가항목 별 평가점수가 평가배점의 6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정평가 평가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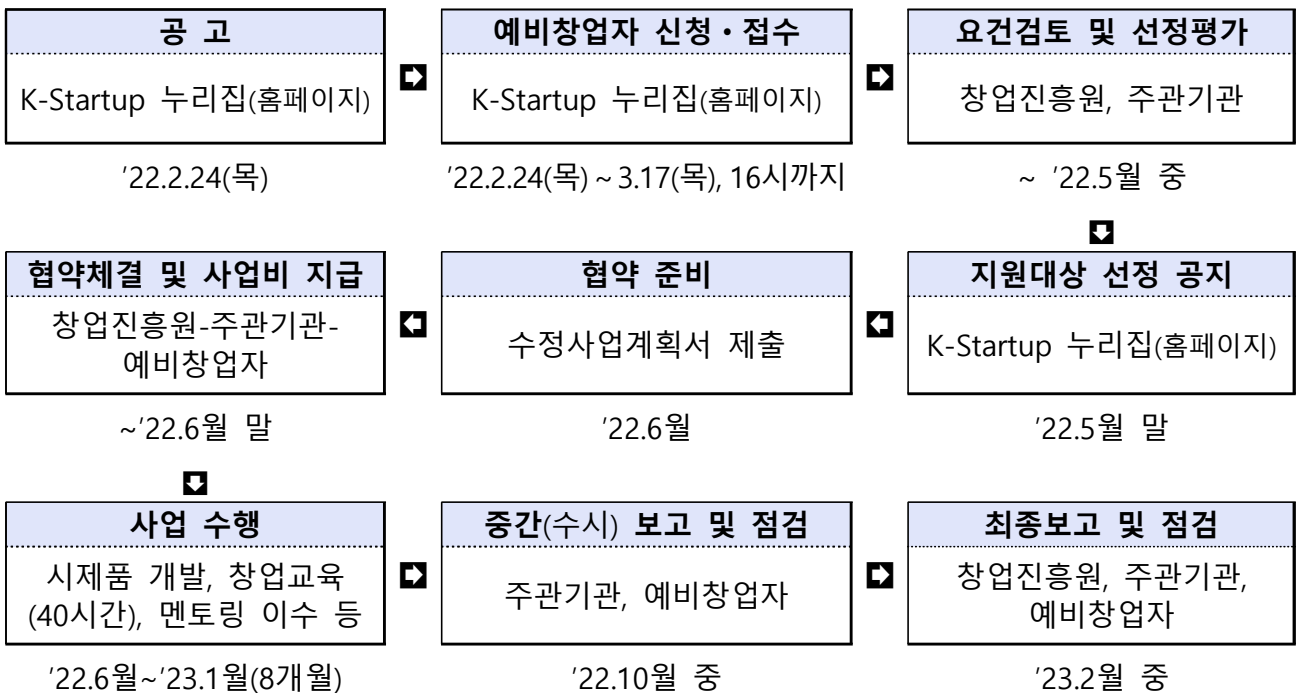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문제인식	• 창업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문제인식)와 해결방안(필요성) 등	35점
실현가능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35점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15점
팀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예정인)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15점

## □ 최종선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정부지원금 배정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배정하며,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 계획서에 작성한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음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 사업 운영일정

※ 추진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예비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 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통합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공동 작성자 모두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여 평가과정 중 탈락, 선정취소, 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건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동 사업 신청은 창업을 하려는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K-Startup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1개의 지원사업만 수행 가능(타 사업 동시수행 불가)
  - \* (창업지원사업) '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앙부처 사업화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 (주의) 동시 선정 시, 각 사업의 협약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고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
- 신청 제한 시간까지 사업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 한하여 평가 참여가 가능
- 동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글(hwp) 및 워드(Word)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함\*
  - \* 신청 시 PDF 파일로 업로드 또는 암호화된 한글, 워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관련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붙임 제3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 참고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의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정부지원금 신청액을 초과한 정부지원금 배정은 불가하며 정부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지급됨



- 정부지원금은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창업중심대학에서 지원하는 예비창업자 모집공고는 상반기 중 별도 진행할 예정으로 지원내용, 의무사항, 선정규모 등 세부 지원사항은 동 공고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5]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개요' 참조

사업설명회

- '22년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영상은 '22. 3. 7(월) 17시부터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가능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신청·접수시스템 (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주관기관 문의처

- 일반분야 주관기관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박진솔	033-248-7960	jaay@ccei.kr
	매니저	원지영	033-248-7958	srj@ccei.kr
	사원	신민진	033-248-7961	viva@ccei.kr
건국대학교	매니저	박대기	02-450-4256	eory1001@konkuk.ac.kr
	매니저	나현지	02-450-3347	izneyh@konkuk.ac.kr
	매니저	홍미소	02-450-4258	hmeso504@konkuk.ac.kr
경기대학교	팀원	전혜영	031-249-8702	startravel@kgu.ac.kr
	팀원	우은정	031-249-8666	wej12@kgu.ac.kr
	팀원	강한경	031-249-8663	khk0596@kgu.ac.kr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박윤성	070-4164-6486	point1225@ccei.kr
	주임	김가현	070-4164-8946	hyun_039@ccei.kr
	주임	신기은	070-4299-7810	gieun@ccei.kr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원	김민조	055-291-9368	yoyo25@ccei.kr
	연구원	배한진	055-291-9384	bhj9384@ccei.kr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임언수	054-470-2625	sooy337@ccei.kr
	매니저	권수연	054-470-2633	sykwon@ccei.kr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계명대학교	책임매니저	김영아	053-620-2045	kya@kmu.ac.kr
	매니저	박민경	053-620-2066	aruddll0401@kmu.ac.kr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전임	김태형	062-364-9141	thk@ccei.kr
	주임	안명섭	062-364-9143	ams@ccei.kr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김혜지	053-759-8617	hj.kim@ccei.kr
	매니저	김용학	053-759-9658	kyh@ccei.kr
	매니저	홍완기	053-759-8132	yghong@ccei.kr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김군태	042-385-0620	robin@ccei.kr
	선임	오은정	042-385-0761	ej_oh829@ccei.kr
	주임	황원덕	042-385-0797	duk0478@ccei.kr
동국대학교	선임매니저	민관석	02-2088-3737	startup@dgu.ac.kr
	매니저	정동주	02-2088-3737	startup@dgu.ac.kr
	매니저	이정화	02-2088-3737	startup@dgu.ac.kr
동아대학교	매니저	정유나	051-200-6365	wjddbksk44@dau.ac.kr
	매니저	문지영	051-200-6452	moondy@dau.ac.kr
	매니저	신상철	051-200-6365	ssc0115@dau.ac.kr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박기쁨	051-749-8952	pipiyo77@ccei.kr
	매니저	장한이	051-749-8977	hijang@@ccei.kr
	매니저	신혜인	051-749-8959	hyein930@ccei.kr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	차장	김진욱	061-345-7763	jw.kim@kepco.co.kr
	대리	소병채	061-345-7765	tqc4454@kepco.co.kr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김선호	02-798-9319	shkim@ccei.kr
	매니저	조진표	02-739-5198	jpcho@ccei.kr
	매니저	정용주	02-739-7329	yjjung@ccei.kr
성균관대학교	매니저	추민정	031-290-5857	wjden30@skku.edu
	매니저	김현지	031-290-5850	hyeonji3@skku.edu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주임	김종현	044-999-0239	kjh0236@ccei.kr
	주임	이예랑	044-999-1047	lyr@ccei.kr
수원대학교	선임	이진아	031-229-8588	jalee21@suwon.ac.kr
	매니저	신동영	031-229-8574	vj610@suwon.ac.kr
연세대학교	전문위원	김남수	02-2123-4306	nskim024@yonsei.ac.kr
	매니저	박수현	02-2123-4413	spaark@yonsei.ac.kr
	매니저	이예지	02-2123-4849	yeji4117@yonsei.ac.kr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배수진	052-716-5160	ellabsj@ccei.kr
	주임	이진경	052-222-9019	april416@ccei.kr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인천대학교	매니저	정이삭	032-835-9687	prestartup@inu.ac.kr
	매니저	최나해	032-835-9686	
	매니저	한지연	032-835-9689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이상철	032-458-5035	sclee@ccei.kr
	매니저	고광진	032-458-5032	kkj7310@ccei.kr
	매니저	안재희	032-458-5037	jhh9615@ccei.kr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주임	김정인	061-661-1934	jikim@ccei.kr
	사원	김주환	061-661-1935	story625@ccei.kr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사원	박하주	063-220-8952	hjpark1@ccei.kr
	사원	서현지	063-220-8943	hyunejee45@ccei.kr
전주대학교	선임매니저	허승	063-220-2846	hur0874@jj.ac.kr
	매니저	정다영	063-220-2853	mayzero@jj.ac.kr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팀장	강보경	064-710-1980	kbk0725@ccei.kr
	전임	권록단	064-710-1983	thirdgreen@ccei.kr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	한석균	041-536-7853	hansk@ccei.kr
	사원	박소연	041-536-7882	syp0703@ccei.kr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황종윤	043-710-5924	hgy@ccei.kr
	매니저	정현진	043-710-5926	purple0103@ccei.kr
한밭대학교	팀장	김태우	042-828-8671	twtwtw@hanbat.ac.kr
	매니저	박근애	042-828-8666	pppark@hanbat.ac.kr

○ 특화분야 주관기관

특화분야	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직급	성명		
소셜벤처	벤처기업협회	매니저	이경은	02-6331-7125	lge@kova.or.kr
		매니저	김성득	02-6331-7127	david.kim@kova.or.kr
		매니저	나유리	02-6331-7128	nyr@kova.or.kr
여성	한국여성벤처협회	매니저	김민혜	02-3440-7472	mhkim@kowwa.or.kr
		매니저	심예진	02-3440-7465	yjsim@kowwa.or.kr
		매니저	장은지	02-3440-7464	ejjang@kowwa.or.kr
그린경제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팀장	서희동	044-860-3878	seo2021@korea.ac.kr
		매니저	장하리	044-860-3879	jhari@korea.ac.k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파트장	김태환	02-970-9296	kth17@seoultech.ac.kr
		전문매니저	이혜지	02-970-9157	hyeji71@seoultech.ac.kr
		전문매니저	김윤정	02-970-9047	anesyj@seoultech.ac.kr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책임	김지도	063-219-3592	jido@kcarbon.or.kr
		선임	소현진	063-219-3598	shj0717@kcarbon.or.kr
선임		강우석	063-219-3593	wskang@kcarbon.or.kr	
D.N.A	광주과학기술원	담당	이경아	062-715-6310	leeka123@gist.ac.kr
		담당	임지수	062-715-6306	limjss25@gist.ac.kr
		담당	김지웅	062-715-6305	kjiwoong@gist.ac.kr
	한국발명진흥회	과장	장인준	02-3459-2860	injun@kipa.org
		사원	류동민	02-3459-2825	ryuudm@kipa.org
	한국특허정보원	대리	정수영	02-6915-1569	sooy@kipi.or.kr
		대리	주시현	02-6915-1424	j8765@kipi.or.kr
사원		김채원	02-6915-1593	codnjs3646@kipi.or.kr	
바이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이춘권	02-2095-1737	leecg17@khidi.or.kr
		연구원	김정현	02-2095-1744	kimjh1950@khidi.or.kr
무인이동체 (자율주행·드론)	한국도로공사	차장	전현수	054-811-3328	cap8801@ex.co.kr
		대리	이은혜	054-811-3329	eunhye@ex.co.kr
핀테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주임	이승하	02-6375-1536	shlee@fintech.or.kr
		사원	임수연	02-6375-1537	syim@fintech.or.kr

## 【붙임 1】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 【붙임 2】

###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09~'22년) 내 동 사업 지원제외 사업 목록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 TIPS 연계지원(사업화, 프리·포스트팁스), 창업기획사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 (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업터 사업화 지원 (사업화(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재도전성공패키지 (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단, 2017년(1, 2차)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 또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의 Track1(BM고도화)만 지원받은 경우는 동사업 신청 가능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 (사업화)
-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 (3단계)

**【붙임 3】**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목록**

주무부처	연번	경진대회명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1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97호, 제2021-497호)
	2	도전!K-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208호, 제2021-186호)
	3	여성창업경진대회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03-10호, 제2021-03호)
	4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27호, 제21-112호)
	5	청청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59호)
산업통상자원부	6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0-45호, 제2021-02호)
	7	로봇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로봇산업협회 공고 제2020-1-012호, 2021-1-017호)
	8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2019-07-1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	인공지능 R&D 그랜드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570호, 제2021-0748호)
국토교통부	10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 (자동차안전학회 2020-03-18, 2021-03-03)
금융위원회	11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핀테크 지원센터 2020-08-18, 2021-09-01)
농림축산식품부	12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고 제2020-142호, 제2021-148호)
특허청	13	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 (한국특허정보원 2020-03-13, 2021-03-15)
해양수산부	14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935호, 제2021-807호)
	15	해양산업 오션 비즈니스 창업 경진대회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252호, 제2021-219호)
행정안전부	16	법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276호, 제2021-188호)
환경부	17	환경창업대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091호, 제2021-057호)



**【붙임 4】**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제품·서비스를  
과제로 신청한 예비창업자 가점 자격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따른 감염병에 해당하고 아래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인 예비창업자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 업종분류코드 세세분류(5자리) 일치 시 가점으로 인정. 단, 법정감염병에는 해당 하나 업종분류코드 불일치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가점 인정 여부를 결정

**< 감염병 예방·진단·치료 관련 업종코드 >**

번호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3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4	한약약품 제조업	21220
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7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붙임 5】**

**창업중심대학 창업사업화 지원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거점 역할 수행을 통해 예비-초기-도약으로 이어지는 성장단계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강화
- \* 창업중심대학은 예비, 초기, 도약패키지 주관기관 역할을 동시 수행하는 기관이며,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이 기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 초기, 도약패키지)과 지원사항과 상이 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부터 7년 이내 창업기업(창업중심대학 사업별 별도 모집예정)
  - 일부 T/O는 권역 내 (예비) 지역기업·청년 창업가에 배정 예정

구분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예비창업자	창업(사업 개시일) ~ 3년 이내	창업 3년 ~ 7년 이내
지원규모 (1개 주관기관)	510개(85개)	240개(40개)	150개(25개)	120개(20개)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각 사업별 지원금액 상이)
- (지원 프로그램) 각 사업별 특화(기본)+ 자율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기본	▶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사업별 기본 프로그램 지원		
	<b>예비창업패키지</b> • 1:1 전담 멘토링제 • 창업 교육	<b>초기창업패키지</b> • 선정기업 전용 프로그램 • 투자유치 원스톱상담창구	<b>창업도약패키지</b> • 도약기 창업기업 대상 특화 프로그램
자율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가 정신 촉진' 관련 자율 프로그램 지원(창업중심대학별 프로그램 상이)		
	<b>창업교류 협력</b> • 권역 내 타 대학 등과 협업 프로그램 운영	<b>창업문화 확산</b> • 청년·재창업 인식개선을 위한 창업 행사 개최 등	<b>창업역량 강화</b> • 전문 창업강좌, 컨설팅 등 교육 및 멘토링 운영

**□ 창업중심대학 지정현황(6개)**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합계
지정현황	1	1	1	1	1	1	6
기관명	한양대	호서대	전북대	강원대	대구대	부산대	

\*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별 문의처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상반기 중** 별도 안내 예정